

일본 탐정의 장기미제 실종자 조사

Japanese Private Detective Investigation of Long Term Missing Person

신재현*, 김상운**

동국대학교 범죄학*,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Jae-Hun Shin(enfant21@naver.com)*, Sang-Woon Kim(ksw48@naver.com)**

요약

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 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중심어 : | 일본탐정 | 장기미제 실종자 | 민간조사 | 경찰 | 치안서비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y giving an example of Japanese detective investigation on people who have been missing for a long time.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 and used preceding researches on Japanese detective system to complet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missing people in Korea and Japan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Conclusion: In Japan, about 80,000 people are reported to be missing every year. Although most of them are found on that day or within a week, some of them are not found for more than a week. There even a case where the person was missing for more than 3 years. In such case, the Japanese citizens requests detectives to find the missing person instead of depending on the police.

When Japanese detectives are paid by their client, they provide the security service requested by the client. Japanese detectives receive about 100,000 yen to 700,000 yen for finding missing person and they find the missing person through investigation on voluntary or involuntary missing person. Such activities of Japanese detectives point ou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Currently, most missing people are not found in Korea.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ill help in finding the missing person, reducing the excessive workload of police, and creating jobs.

■ keyword : | Japanese Private Detective | Long Term Missing Person | Private Investigation | Police | Security Service |

I. 서론

산업혁명 이후 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경제 규모 팽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절도·강도·살인·폭력과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서 진화하여 사기·횡령과 같은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or Crime), 컴퓨터 및 전자기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진적 사회변화로 인하여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안전요구와 재산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치안수요를 급속히 증가시켜 국가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

그러나 많은 경찰 업무 중 범죄의 다양성, 범죄의 전문화, 수사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사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2]. 다시 말해, 강력사건의 증가와 공권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업무폭증으로 미흡한 수사와 일률적인 수사기법으로 국민들은 수사기관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부가적으로 이러한 수사기관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3].

그러나 오래전부터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과 같이 개인적인 조사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탐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탐정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발의에서도 경찰청과 법무부 사이에서 주도권 쟁탈이 문제가 되어 아직까지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지 못해 합법적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탐정업이 합법화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한계이다. 2018년 경찰백서를 통하여 발표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무려 경찰 1인당 513명을 담당하였으나, 많은 증원 노력으로 444명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른 OECD국가와 같이 경미한 범죄의 사실조사, 미아·치매환자의 소재파악, 실종자 수색과 같이 비범죄적 성격이 강한 업무에 대하여 민간차원의 치안서비스 생산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장기미제 실종자 조사에 대한 일본 경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탐정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탐정제도 입법 사례로 소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발표된 탐정 관련 선행연구들과 경찰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완성하였으며, 일본의 실종자 조사에 대한 경찰활동과 일본탐정의 장기미제 실종자 조사 관련 자료는 선행연구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II. 일본의 장기미제 실종자 현황 및 대응

1. 장기미제 실종자의 개념

장기미제 실종자를 논하기에 앞서 실종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종자란 “부재의 상황을 불문하고, 실재하는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즉, 사람의 위치와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실종’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

표 1. 실종자의 정의[5]

Category	Content	
실종아동 등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찾는 실종 아동 등	악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자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치매질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아동 등에 준하여 처리	보호실종 아동 등	
	장기실종 아동 등	
가출인 (실종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이상의 자)	가출 청소년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의 자
	가출 성인	보호자가 찾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
행방불명자	실종아동·가출인 중 합동심의 결과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할 대상자	

일본에서는 실종자에 대하여 「행방불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行方不明者発見活動に関する規則)」을 통하여 정의하고 있다. 실종자를 크게 일반 실종자와 특정 실종자로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종자란 생활의 본거지를 떠나 그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로서 정의하고 있지만, 특정실종자에 대하여 표2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정 실종자는 범죄의 위협에 빠져 즉시 구조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협에 빠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특정실종자의 경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가 판단하여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명에 관한 사안일 경우 적극적으로 수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행방불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行方不明者発見活動に関する規則)」의 특정실종자 대상

1. 살인·납치 등의 범죄에 의해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2. 복지를 해치는 범죄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3. 실종되기 전 행동, 기타 사정에 비추어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4. 유서가 있다는 등 평소의 연동 상 자살이 우려되는 자
5. 정신장애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
6. 환자·노인·연소자 등 자력이 부족하여 생명·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미제 실종자에 대하여 살펴 보면 우선, 「행방불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行方不明者発見活動に関する規則)」에서는 장기미제 실종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 15조에서는 “(수색원) 접수한 경찰서장은 실종자 신고를 접수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실종자 신고에 관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수리표의 사본을 작성하고 경찰본부 감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受理署長は、行方不明者届を受理した日から一月を経過しても当該行方不明者届に係る行方不明者が発見されないときは、受理票の写しを作成し、警察本部の鑑識課長(以下「本部鑑識課長」という。)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고 규정하여 사실상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1달로 보고 있으며, 1달이 지났을 경우 장기미제 실종자로 판단하여 경찰본부에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장기미제 실종자의 특성

일본의 장기미제 실종자들은 크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종되는 경우와 자신이 자발적으로 소재를 감추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종되는 경우 사고·범죄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소재를 알릴 수 없거나, 지적장애·치매질환을 가지고 있어 정확하게 소재를

알릴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위치정보 등을 받아 장기미제 실종자들을 다시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실종신고 후 초기 대응 실태로 장기미제 실종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상적인 성인의 실종은 범죄와 같이 심각한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후순위로 미뤄 장기미제 실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성인 실종자의 95.3%가 단순 가출로 자진 귀가하여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성인의 실종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금전적 문제 및 가정불화, 이성 문제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실종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실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본경찰의 소홀한 대응으로 인해 장기미제실종자가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3. 일본의 장기미제 실종자의 실태

일본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약 8만여 건에 가까운 실종사건이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이 5만4천여 건이 신고되고 있으며, 여성이 약 2만8천여 건에서 3만여 건 정도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실종신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5년 평균 약 6만 4천여 건 정도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세 미만의 소년 실종신고는 2만 여 건 이하로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찰에 실종 신고된 실종자 중에서 대부분은 소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년 약 1천~2천여 명 정도는 1년 이상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본의 실종자 현황(2014-2018)[6]

년도	합계	실종자 등록				실종자 발견
		성별		연령		
		남	여	성인	미성년자	
'14	83,948	53,916	30,032	63,147	20,801	82,182
'15	81,193	52,736	28,457	62,461	18,932	79,269
'16	82,035	53,319	28,716	64,064	17,971	80,232
'17	84,850	54,664	30,186	66,600	18,250	83,865
'18	84,850	54,574	30,276	67,240	17,610	81,946

실종자 소재가 파악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당일 소재가 파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확인인 경우 당일보다는 “2~7일” 사이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방불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行方不明者発見活動に関する規則)」1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고 접수 후 1개월 이상이 넘는 장기미제 실종자의 경우 9,806명으로 전체 실종자 중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1달 이상 실종상태가 된 장기미제실종자가 전체 실종신고 건수의 1%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7].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동일한 조건이 아닐지라도 일본의 장기미제 실종자 비율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일본의 실종자 확인 현황(2018)[6]

소재확인										
	합계	당일	2일 ~ 7일	8일 ~ 14일	14일 ~ 1월	1월 ~ 3월	3월 ~ 6월	6월 ~ 1년	1년 ~ 2년	2년 이상
소재 확인	71,371	31,829	24,394	2,770	2,572	2,811	1,529	1,499	1,279	2,688
사망 확인	3,837	789	1,712	268	263	263	112	104	84	233
기타	6,738	521	746	208	268	482	362	873	677	2,601
합계	81,946	33,139	26,852	3,246	3,103	3,565	2,003	2,476	2,040	5,522

실종자가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일본 또한 노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질병원인(치매)’에 의한 실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관계’에 의한 실종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사업 및 직업관계’에 의한 실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범죄’ 원인에 의한 실종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108년에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일본의 실종자 신고 원인을 살펴보면, ‘치매’에 의한 실종과 같이 장기미제 실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실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본인 실종원인(2014-2018)[6]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질병원인	16,245	19.4	16,498	20.3	18,395	22.4	21,852	25.8	22,162	26.1
	치매	10,322	12.3	10,792	13.3	12,208	14.9	15,432	18.2	15,863
가정관계	17,919	21.3	16,369	20.2	16,115	19.6	16,142	19	14,846	17.5
사업, 직업관계	9,095	10.8	8,729	10.8	9,382	11.4	9,103	10.7	9,912	11.7
학업관계	2,386	2.8	2,014	2.5	2,099	2.6	2,320	2.7	2,342	2.8
이성관계	1,968	2.3	1,824	2.2	1,669	2.0	1,737	2.0	1,643	1.9
범죄관계	700	0.8	612	0.8	533	0.6	580	0.7	623	0.7
그 외	21,635	25.8	20,889	25.7	20,191	24.6	1,934	22.8	19,054	22.5
미상	14,000	16.7	14,258	17.6	13,651	16.6	13,776	16.2	14,268	16.8
총합	83,948	100	81,193	100	82,035	100	84,850	100	84,850	100

이러한 실종자 대응을 위해 일본경찰에서는 실종자 대응을 위한 전문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실종신고 초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 내에서는 많은 경찰자원 투입이 용이하지 않은 탓에 높은 수준의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4. 일본의 실종자 발생 대응

4.1.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 원칙

일본 경찰에서는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경찰청 통지(공고) 등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실종자 발생 시 세 원칙을 바탕으로 실종자 발견에 노력하고 있다. 첫째, 생명 및 신체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生命及び身体の保護を図るため、迅速かつ的確に対応)[8]. 실종사건의 가장 우선적인 핵심은 안전하게 실종자를 찾아내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종자 발생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원칙은 실종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한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한 원칙이 우선되고 있다.

둘째, 범죄 피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한다(犯罪被害によるもので

ある可能性を考慮し、事案に応じ、必要な捜査を行う)[8]. 실종자의 경우 범죄로 인한 실종일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 특히, 범죄로 인한 실종일 경우 초동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실종일 경우 적절한 조사가 중요하다.

셋째, 경찰과 관계 기관 및 부서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경찰의 조직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關係する警察や各部門が緊密に連携し、警察の組織的機能を十分に發揮)[8]. 실종사건의 경우 단일 기관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실종자의 경우 빠른 시간 내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사망 혹은 장기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서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되지 않도록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4.2 수색원을 활용한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

일본 경찰에서는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조치에 집중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적극적인 수색활동 등 실종자를 찾기 위하여 일본 경찰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색원(搜索願)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수색원은 2010년(헤세이 22년) 「실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行方不明者発見活動に関する規則)」에 따라 경찰에 실종된 사람의 수색을 위하여 경찰에 수색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색원이란 경찰에 범죄 또는 심각한 위해가 의심되는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수색을 요청하는 신청서로서 일반적인 실종과 달리 위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 수색원에 기재된 내용을 정보로 이용하여 실종자 수색을 실시한다. 실종자 수색원이 제출된 후 특정실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인 수색작업이 실시된다[9].

실종자 수색원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친권자, 배우자, 상속인 등 친족, 실종자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동거인, 연인, 실종자의 고용인 등이 수색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0].

수색원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의 최근 사진, 이름, 본적, 주소, 직업, 생년월일, 체격, 신체적 특징, 실종지 복장, 본인의 특정 소지품, 자주 가는 장소, 약물사용 기록, 실종원인으로 판단되는 내용, 도움

이 될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10].

그림 1. 일본경찰의 실종자 수색원 양식

수색원이 제출되어 즉시 수색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정청취·공개수사·감식수사·경찰견수사 등을 실시한다. 우선 사정청취를 통하여 실종자 주변인에게 면담조사를 통하여 정보 및 사건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후, 경시청(警視庁)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실종자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상황에 따라 미디어를 이용하여 공개수사를 한다.

범죄 관련 혹은 실종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종자가 실종장소 및 실종자 거주 지역 등에 대한 감식 등 과학수사를 실시하여 실종자를 찾기 위한 활동일 실시하며 경찰견을 이용한 수사를 실시한다.

이후에도, 실종자의 실종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수색원 제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시도부현 경찰서에서 실종자 정보를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있는데, 작성방식 및 게재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통상적으로 각 경찰서에서 게재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의 실종 당시 기준 최근 사진, 성명, 나이(실종 당시 기준), 신장, 체중, 복장(브랜드를 기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술), 특징, 실종 당시 상황, 실종자 연락처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게재하고 있다. 또한 특정 경찰서에서는 PDF 파일로 만들어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한다[6].

向島警察署 平成30年第24号

更新日：2019年4月10日

この人を探してください

受理年月日
平成30年3月11日

人相、特徴
身長160センチメートル、中肉、茶色短髪、面長

行方不明時の服装
黒色ダウンジャケット、色不明スポンを着用

行方不明時の状況
平成30年3月11日(日曜)午後8時30分ごろ、豊田市内の自宅から行方不明となっています。お心当たりの方は、下記警察署または最寄りの警察にお知らせください。

■ 向島警察署 平成30年第24号 (PDF形式：119KB)

PDF形式のファイルを開くには、Adobe Acrobat Reader DC (旧Adobe Reader) が必要です。お持ちでない方は、Adobe社から無償で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Adobe Acrobat Reader DCのダウンロードへ](#)



行方不明者写真

그림 2. 일본 동경도 경시청에 게시된 실종자 안내[6]

4.3 일본 경찰의 실종자 조사의 어려움

일본의 실종자 조사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찰시스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광역적인 실종자 대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많은 자치경찰체 국가들이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광역적 활동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혼슈(本州)를 제외한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큐슈(九州)의 경우 이동 및 광역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대규모 수색을 위한 경찰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색원을 작성하여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던 수색원의 기재 내용 등이 통일되지 않게 되어 있는 등 광역적인 문제에 대응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적 유행도 실종자 조사에 한몫한다. 2000년대 이후 자발적인 실종자가 증가하면서 자발적 실종상태를 만들어주는 업체까지 등장하게 되어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 금전적·개인적 사유로 자발적으로 실종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적으로 자발적 실종을 지원하는 업체를 통하여 사라지기 때문에 이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셋째, 일본의 물리적 지형도 실종자 수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작용한다. 일본의 도심지역은 과거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계획된 도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심지역을 떠나 홋카이도(北海道)와 같은 동북지방의

경우 지역과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일본의 특성상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343명/km²) 경찰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일본 지역 간 물리적 연결이 떨어진 것과 잦은 지진 발생과 같은 자연적 재해도 실종자 수색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III. 장기미제 실종자 조사 대안으로서의 일본 탐정제도

1. 장기미제실종자 조사 대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미제 실종자를 수색하기에는 많은 인적자원을 투입하기에는 각 지역 경찰서 별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일본에서는 경찰 이외에도 실종자를 조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탐정(민간조사원)이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행방불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行方不明者発見活動に関する規則)」에서 규정 한 것과 같이 신고 후 1달의 시간이 지난 경우, 범죄발생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관만 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탐정업체 등을 통하여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실종자 수색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2. 일본 탐정의 실종자 조사 실태

2006년 탐정이 합법화된 이후 탐정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7,738개소의 업체에서 약 6만 여 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으며, 약 250만 건의 사건을 의뢰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탐정은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에 따라 일본에서는 탐정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인 공안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탐문·미행 등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직업으로 대우받게 되었지만 탐정에게 주어진 권한은 일반인과 동일하기 때문

에 전문적인 사설교육을 수료한 탐정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들이 전부 실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제13조(출입검사)를 통하여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 정기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지시)에 의하여 탐정업체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절한 처분을 하고, 동법 15조에 따라 도도부현 경찰서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의 처분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도쿄경시청에는 탐정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부서에서 경비업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경찰의 지도 감독은 연 1회 이상 이뤄지고 있고, 이들은 사건관리대장, 계약서, 컴퓨터 기록의 암호화, 서류보관함 시정장치 여부, 종사자의 이력서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탐정은 많은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탐정업체의 경우 빠르게 도태되고 있다. 특히,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사 및 실종자 조사 건에 대하여 금액 및 조사방법, 조사경력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게재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불법경력이 있거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탐정은 업계에서 사라지는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탐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조사방식이 통일되거나 동일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혹은 기타 불법사항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탐정은 실종자를 조사할 있어서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보 수집 및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 경찰 출신 조사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인 자정 활동을 통하여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일본의 탐정은 불륜, 소행 등의 행동조사, 가출인 및 실종자 찾기, 개인과 기업의 신상 및 신용조사, 증거조사 등 광범위한 대상을 업무로 하고 있으나, 대다수 탐정사무소가 소규모 인원으로 불륜, 소행, 결혼상대자 조사 등 행동조사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Noh &

Jeang, 2016). 탐정업무 중 불륜 관련 업무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변호사 위탁업무가 50%에 달하며, M & A 등을 위한 기업조사가 전체 사건 수입의 40%에 해당하는 등 실종자 조사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등의 증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에 대한 조사로 실종자 관련 조사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3. 탐정을 이용한 일본의 장기미제 실종자에 조사

장기미제 실종자에 일본 경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기미제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미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인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기미제 실종자를 찾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제공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기미제 실종자의 가족은 장기미제 실종자를 찾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실종자의 실종원인을 찾고 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비자발적인 실종의 경우 사고에 의한 실종과 비 사고에 대한 실종의 나뉘 조사를 실시한다. 일본의 경우 지진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실종되었을 경우 탐지견 등을 이용하여 실종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전단지 등을 이용하거나 핸드폰 발신지 추적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하여 실종자의 흔적을 찾기도 한다. 또한 실종자의 사회적 활동 흔적을 찾아 실종자가 실종되었을 때 상황 및 실종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 경우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무장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자발적인 실종의 경우 실종자의 실종원인을 찾아 실종자 조사를 실시한다. 주로 금전적인 원인이 관련되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종자의 신용정보 등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실종자가 실종 여부를 알리는데 있어 사실 전달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상대가 조사 사실을 모르게

조사하기도 한다.

일본의 탐정업체에서는 실종사건에 대하여 적게는 10만 엔에서 많게는 70만 엔의 금액을 받고 실종자 조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실종자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실종자를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사건을 의뢰할 때 의뢰자의 심리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탐정업체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건의뢰시 발생하는 부당한 요금 청구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실질적인 탐정업체에 대한 정보 및 계약 시 요금에 대한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으로 공유함으로써 부당한 탐정요금 및 부당한 탐정업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어 일본탐정업체의 위법한 행위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들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을 대거 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최초로 탐정업을 합법화하기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탐정업에 대한 신뢰 부족,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의 우려, 경찰과 법무부 간의 관할권 다툼 등으로 현재까지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탐정업의 합법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탐정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이 단순하게 다른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치는 등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 없이 입법제정의 주장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탐정업을 합법화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진국 중 우리와 법체계와 행정시스템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탐정업과 관련된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실종자 조사에 대한 탐정의 역

할과 문제점, 보완실태에 대하여 논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약 8만여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하는데, 그 중 많게는 1천여 명에서 3천여 명 이상이 1년 이상 장기미제 실종자로 남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무려 1년 이상 장기미제 실종자가 7천 여 명 이상 소재 확인이 되는 등 1년 이상 장기미제 실종자의 소재파악이 10%대에 육박할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모두 경찰에서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장기간 실종된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노력 대비 경찰력의 한계, 다른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이유로 인하여 경찰에서 장기미제 실종자를 찾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의 업무 중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업무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조사하는 업무를 일본에서는 2006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탐정업에 대하여 합법화하였다.

일본탐정은 직업으로서 인정받아 의뢰인이 의뢰한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중 장기미제 실종자 조사를 하기도 한다. 이들은 약 10만 엔에서 70만 엔 사이의 금액을 받고 실종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는데, 사고나 범죄 등으로 인하여 실종되는 경우와 같이 비자발적 실종의 경우 탐정권을 이용하거나, 드론 등 각종 장비 등을 이용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전·채무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실종되는 경우 사회관계망을 이용하여 실종자의 소재를 찾는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종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경찰 치안서비스 제공의 부족한 부분을 필요한 사람이 재화를 제공하고 민간차원의 조사 활동인 탐정으로 시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경찰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불법으로 규정된 탐정업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1999년부터 탐정업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은 많았으나, 여러 가지 이해문제 등으로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본의 사례를 이용하여 탐정을 활동 범위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제도권으로 합법화시켜 경찰은 강력범죄 등 민생침해 사범

단속에 충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탐정은 실종자 찾기, 보험사기 조사 등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공인탐정업 합법화로 현재 음성화된 흥신소 등의 불법을 근절하고, 퇴직 경찰 및 경찰(경호)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난 극복에 앞장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강영숙, “일본의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권, pp.32-357, 2006.

[2] 이승철, “민간조사어법 제정 방향,”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7권, 제2호, pp.122-128, 2011.

[3] 김현수, “민간조사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3, pp.82-100, 2014.

[4] 지영환, 오일석, 이건수, “실종자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법학, Vol.47, No.3, pp.231-364, 2012.

[5] 이하섭,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Vol.27, No.1, pp.135-164, 2013.

[6] <http://www.npa.go.jp>

[7]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89>

[8] 야후저팬뉴스, 2017. 11. 13, “9名全員の行方不明者届を受けていた警察も座間事件を防げず 不明者発見に向けた活動の実情と限界”
<https://news.yahoo.co.jp/byline/maedatsunehiko/20171113-00078023/&prev=search>

[9] <https://www.police-ch.jp/shissoutodoke.html>

[10] <https://hitosagashi-pro.com/columns/8/&prev=search>

[11] <https://hitosagashi-pro.com/columns/8/>

저자 소개

신 재 현(Jae-Hun Shin)

정회원



- 2013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범죄학박사)
- 경력 : 전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관심분야〉 : 부패, 범죄예방

김 상 운(Sang-Woo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경력 : 현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징계, 조직